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4. 11. .

국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년 6월 7일, 임종득의원 등 12인

나. 회부일자: 2024년 6월 27일

다.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:

제417회 국회(임시회)

제2차 국방위원회(2024.8.27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
소위원회부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
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(2023.9.24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
영폐기)

제3차 국방위원회(2024.9.25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 의결
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임종득의원)

현행법은 법무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·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·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·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,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·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·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류승우)

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·국장급 공무원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25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).

☐ 현행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제6조제3항제2호에서는 법무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·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·국장급 공무

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□ 그런데, 방위산업기술의 지정·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 원활히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다양한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법무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국가기관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.

□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·국장급 공무원도 추가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,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방위산업기술의 지정·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양한 분야의 기술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,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법률안심사소위원장 김병주)

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·국장급 공무원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25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,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